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 어선에 대한 연안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경북·강원 지역에서 연안선망을 비롯한 연안어업과 근해 소형선망 업종 간 청어 등 주요 포획 업종 및 어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에 소형선망 어업과 연안선망 어업의 연중 동해안 지역 조업금지구역을 추가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동해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7)

3. 주요내용

가. 연안선망과 소형선망의 연중 어구사용 금지구역 설정(별표7)

- 1)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은 3해리 외측, 소형선망은 3해리 내측을 연중 어구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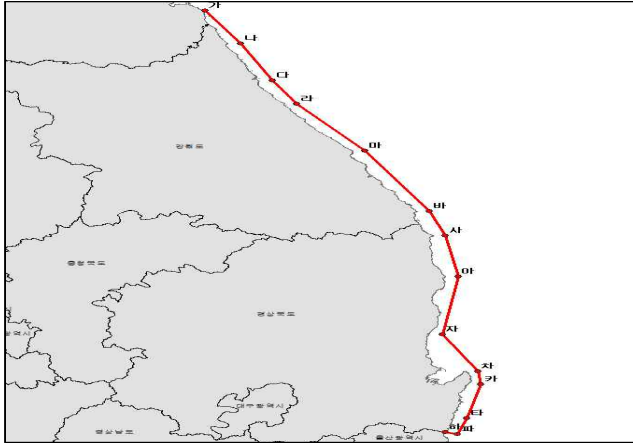
별표7 제1호나목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자) 주18)의 해역
----	-----------	------	----	-------------

주18)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6 참조)

가. 북위38도41분14.63초 동경128도21분31.94초
나. 북위38도27분01.79초 동경128도31분48.63초
다. 북위38도11분05.98초 동경128도40분48.32초
라. 북위38도00분51.09초 동경128도47분47.20초
마. 북위37도40분27.56초 동경129도07분04.20초
바. 북위37도14분11.00초 동경129도24분58.88초
사. 북위37도03분42.44초 동경129도29분21.03초
아. 북위36도46분00.71초 동경129도32분25.08초
자. 북위36도21분11.33초 동경129도27분14.49초
차. 북위36도05분05.32초 동경129도36분59.69초
카. 북위35도59분29.42초 동경129도37분43.64초
타. 북위35도45분04.22초 동경129도33분19.55초
파. 북위35도38분14.22초 동경129도30분33.78초
하.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부도 6]



별표7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자) 주19)의 해역
-----------	------	----	-------------

주19)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부도 6 참조)

- 가. 북위38도41분14.63초 동경128도21분31.94초
- 나. 북위38도27분01.79초 동경128도31분48.63초
- 다. 북위38도11분05.98초 동경128도40분48.32초
- 라. 북위38도00분51.09초 동경128도47분47.20초
- 마. 북위37도40분27.56초 동경129도07분04.20초
- 바. 북위37도14분11.00초 동경129도24분58.88초
- 사. 북위37도03분42.44초 동경129도29분21.03초
- 아. 북위36도46분00.71초 동경129도32분25.08초
- 자. 북위36도21분11.33초 동경129도27분14.49초
- 차. 북위36도05분05.32초 동경129도36분59.69초
- 카. 북위35도59분29.42초 동경129도37분43.64초
- 타. 북위35도45분04.22초 동경129도33분19.55초
- 파. 북위35도38분14.22초 동경129도30분33.78초
- 하.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 1. 근해어업				<별표 7>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제38조제2항 관련) 1.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금지 사항	금지 기간	사용 금지구역	어업의 종류	금지 사항	금지 기간	사용 금지구역
나. 2)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은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 사) 주15)의 해역 아) 주16)의 해역 <신 설>	나. 2)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은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 사) 주15)의 해역 아) 주16)의 해역 자) 주18)의 해역
2. 연안어업				2. 연안어업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나. 연안선망어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나. 연안선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9)의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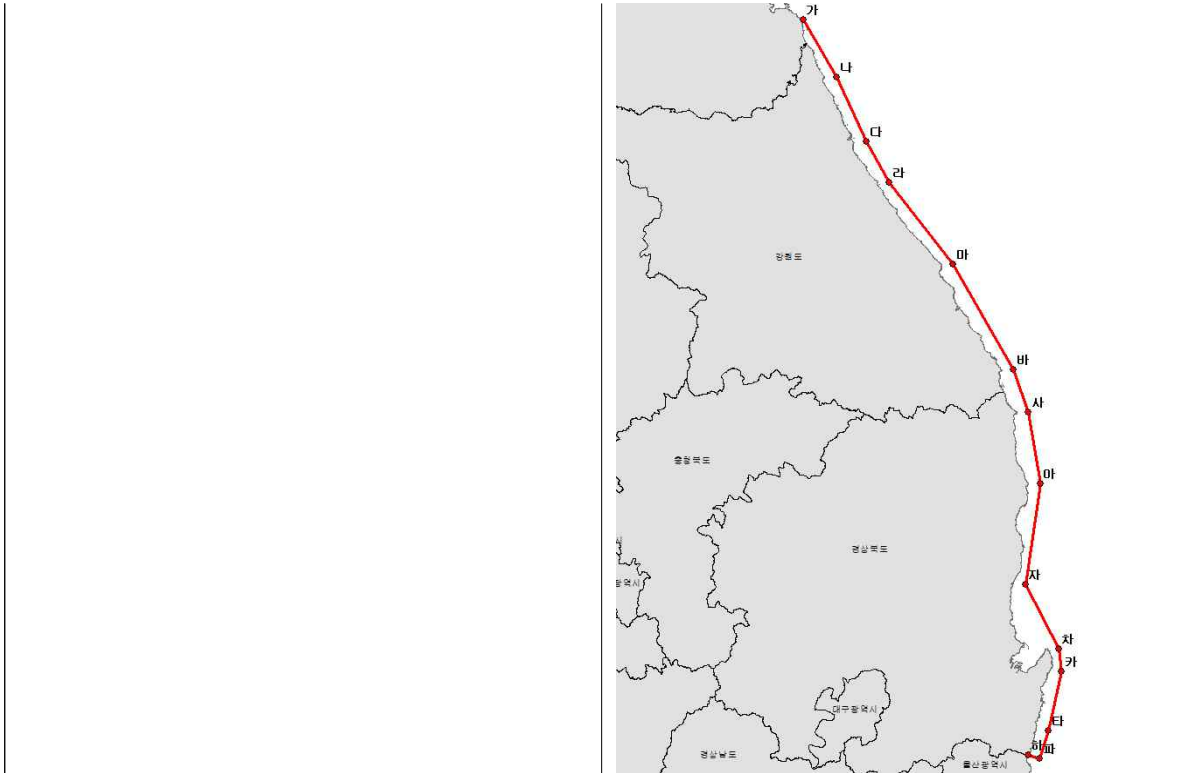
주18)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6 참조)

가. 북위38도41분14.63초, 동경128도21분31.94초
나. 북위38도27분01.79초, 동경128도31분48.63초
다. 북위38도11분05.98초, 동경128도40분48.32초
라. 북위38도00분51.09초, 동경128도47분47.20초
마. 북위37도40분27.56초, 동경129도07분04.20초
바. 북위37도14분11.00초, 동경129도24분58.88초
사. 북위37도03분42.44초, 동경129도29분21.03초
아. 북위36도46분00.71초, 동경129도32분25.08초
자. 북위36도21분11.33초, 동경129도27분14.49초
차. 북위36도05분05.32초, 동경129도36분59.69초
카. 북위35도59분29.42초, 동경129도37분43.64초
타. 북위35도45분04.22초, 동경129도33분19.55초
파. 북위35도38분14.22초, 동경129도30분33.78초
하.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주19)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부도 6 참조)

가. 북위38도41분14.63초, 동경128도21분31.94초
나. 북위38도27분01.79초, 동경128도31분48.63초
다. 북위38도11분05.98초, 동경128도40분48.32초
라. 북위38도00분51.09초, 동경128도47분47.20초
마. 북위37도40분27.56초, 동경129도07분04.20초
바. 북위37도14분11.00초, 동경129도24분58.88초
사. 북위37도03분42.44초, 동경129도29분21.03초
아. 북위36도46분00.71초, 동경129도32분25.08초
자. 북위36도21분11.33초, 동경129도27분14.49초
차. 북위36도05분05.32초, 동경129도36분59.69초
카. 북위35도59분29.42초, 동경129도37분43.64초
타. 북위35도45분04.22초, 동경129도33분19.55초
파. 북위35도38분14.22초, 동경129도30분33.78초
하. 북위35도39분04.22초, 동경129도27분04.06초

[부도 6] 소형선망, 연안선망 조업금지구역선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20